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,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-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, 속기,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,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(안 제1편제15장제92조의2 신설)
-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(안 제122조의2제1호)

4.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제15장(제92조의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장 소송비용

제92조의2(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)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·속기·녹음·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,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2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증인·감정인·통역인(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)·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·여비·숙박료·감정료·통역료·번역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-6058